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① 사 건	전남행심 제2021-280호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② 이 름		
	③ 주 소		
대 리 인	④ 이 름		
	⑤ 주 소		
⑥ 피청구인	○○시장	⑦ 참 가 인	
⑧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⑨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21. 8. 4.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⑩ 이 유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⑪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46조		

위 사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21. 11. 26.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 이 유

## 【제2021-280호,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1. 8. 4. 피청구인에게 ○○○ 조성 관련 ‘○○시 ○○읍 ○○길 ○○ 토지·건물 매입 관련 공문, 거래 내역’ (이하 ‘이 사건 정보’ 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8.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보상금 수령 당사자가 본인의 재산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공개 가능함’ 을 사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1. 8. 27. 피청구인에게 ‘지자체 매입 건은 열람가능 문서’ 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9. 13.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라 개최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해당 이의신청 관련 정보공개청구 안건이 기각 의결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21. 9. 17.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은 2021. 8. 4.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 3. 당사자 주장요지

#### 가. 청구인

1) 청구인은 보상금 받은 당사자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개인의 토지를 얼마에 매입했는지를 알고자 하며,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다.

2) 세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그 금액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지자체는 매년 토지매입 관련으로 결산을 내는데 이것은 비공개 자료가 아니다.

3)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개인과 지자체 간 보상금을 위한 유착관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이유가 없다.

#### 나. 피청구인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18조에 근거하여 2021. 9. 7.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심의결과 해당 정보공개청구 안건은 기각되었다.

3) 또한, 상급기관 유사 검토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시가 ○○시의회의 행정사무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번별 성명 및 보상금액을 ○○시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개인정보가 행정감사 및 조사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공개 될 경우, 토지보상을 받을 사실과 보상금액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보상을 받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보상금액을 노린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토지보상 관련 지번별 대상자의 성명 및 보상금액을 제공할 수 없다고 의결(2021.5.12.)한 바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의

한 적법한 행정처리이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 4. 관계 법령

- 1)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 제9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 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5. 판 단

##### 가.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21. 8. 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시 ○○읍 ○○길 ○○ 토지·건물 매입 관련 공문, 거래 내역

2) 피청구인은 2021. 8. 13.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 해당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상금 수령 당사자가 본인의 재산권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가능

3) 청구인은 2021. 8. 2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이의신청 이유: 지자체 매입 건은 열람 가능 문서임

4) 피청구인은 2021. 9. 7.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2021. 9. 13.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공개청구 안건이 기각되었음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주문이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보상금 수령 당사자의 재산 등 개인정보보호 필요

5) 청구인은 2021. 9. 17.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3조 및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 2) 판 단

가) 청구인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개인의 토지를 얼마에 매입하였는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이 사건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통해 개인의 재산 내역을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다수 필지의 보상금액이 아닌 특정한 물건(○○시 ○○읍 ○○길 ○○ 토지·건물) 관련 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개인의 재산 보호에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인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관련 서류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물건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등과 물건소유자의 성명, 그 밖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물건 조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조항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가 가능하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이 작성된 보상협의요청서는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상금액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우려되어 비공개함이 타당할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행정안전부 2019 정보공개 운영안내서 141쪽 참조).

다) 또한 청구인은 지자체가 매년 토지매입 관련으로 결산 자료를 공개하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자체 결산 자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사전정보공개의 일환이므로 청구인의 관련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